

## ICC 중재에서 중재법원의 역할이 KCAB 국제중재규칙에 주는 시사점

(사무국, 중재판정부, 국제중재위원회의 업무분장을 중심으로)\*

안 건 형\*\*

- 
- I. 서론
  - II. ICC 중재조직의 구성과 역할
  - III. 중재법원의 역할
  - IV. KCAB 국제중재규칙의 운영방안 - ICC 중재법원의  
역할에 착안하여
  - V. 결론
- 

### I. 서론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라 한다)는 1919년 10월 미국 뉴저지주 애틀란틱 시티에서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

\* 이 논문은 2008년 6월 13일(금)에 개최되었던 「제39회 한국무역상무학회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산학협동 하계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일부 수정한 것임

\*\* 대한상사중재원 과장,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박사과정

아, 벨기에 등의 기업 대표들이 모여 전후 세계경제 재건, 국제통상의 부흥에 관한 회의를 개초한 데서 비롯되었다. 참가국 대표들은 이 회의를 통해 민간기업인에 의한 영구적인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그 다음해인 1920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역사적인 창립총회가 개최됨으로써 ICC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sup>1)</sup>

ICC 국제중재법원(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이하 중재법원)은 1919년 ICC가 설립된 후 4년 만인 1923년에 설립되어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중재기구로 발전하였다.<sup>2)</sup>

1923년 설립 이래 2007년에 누적된 중재신청이 15,000건을 이르렀는데, 공교롭게도 그 15,000번째 사건은 한국의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의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한 지분매각 관련 중재 사건이었다.<sup>3)</sup>

또한 2006년 ICC에 신청된 중재사건 593건, 1,613인의 당사자들 중 한국 국적의 당사자가 37인에 이르러 중국과 더불어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는 12번째로 많은 수에 해당한다.<sup>4)</sup>

ICC는 2007년 599건의 신건이 접수되어 역사상 가장 많은 중재신청 기록을 세웠다. 126개국 1,611인의 당사자들이 중재사건에 참여하였으며, 사건 전체의 11.4%가 정부 또는 정부산하 기업이 적어도 일방당사자로 참여하였다. 중재지는 전세계 42개국에서 개최된 바 있고 ICC 중재규칙에 따라 선정 또는 확인(confirmed)된 중재인의 국적이 66개에 달할 만큼 가파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5)</sup>

1) ICC-KNC, 국제상업회의소 한국위원회, 1999, p. 2.

2) 오원석, 「ICC 중재에서 중재법원의 중재판정 검토(Scrutiny) 제도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7, p. 2.

3)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Bulletin*, Vol. 18, 2007, p.18: 당사자들은 런던을 중재지로, 우즈베키스탄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중재판정까지 가지 않고 절차 진행 중에 양당사자의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4) *Ibid.* pp. 6-7: 한국 국적의 당사자가 신청인인 경우가 19인, 피신청인인 경우가 18인이다. 그런데 이 숫자가 사건의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복수당사자 사건들이 있기 때문이다(오원석 안건형, 「ICC 중재에서 중재법원의 제3중재인 선정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3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8, p. 2, 각주 3 재인용).

5) 해마다 ICC 중재사건 통계를 ICC Bulletin을 통해 발표하는데 2008년도 Bulletin은 아직 출간되지 않았다(<http://www.iccwbo.org/court/arbitration/id18648/index.html>,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ICC 중재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물론 국제중재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조차 중재법원의 실체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중재법원이 다른 중재기관들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는 ICC 중재만의 독특한 개념이고 중재법원의 업무가 엄격하게 대외비(confidentially)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sup>6)</sup>

이에 논자는 중재법원의 실체와 중재법원이 ICC 중재에서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 즉, 1) 임시예납금의 결정, 2) 중재합의의 일응의 존재 여부 판단, 3) 중재판정부 구성, 4) 중재인기피, 5) 중재판정문 검토, 6) 그 외에 중재비용 및 중재인수당의 확정, 기한의 연장 등 기타 사항에 대해 ICC 사무국에서 10개월 동안 연수를 받으면서 실제로 보고 배웠던 경험을 토대로 실증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고와 유사한 내용을 다룬 기존의 선행연구로는, 김영학(2007), 신정식 김용일 박세훈(2007), 오원석(2006), 오원석(2007), 오원석(2007), 오원석 안건형(2008), 최장호(2000) 등이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중재인선정, 중재비용 그리고 중재위탁요지서(Terms of Reference) 등 개별 사안만 다루고 있거나<sup>7)</sup>, 중재법원의 역할에 대해 문헌을 통한 다른 중재기관 또는 규칙들과 비교를 하고 있는 논문들은 찾아볼 수 있지만<sup>8)</sup> 중재법원이 실제

5. 6.(화) 20:10 방문).

6) Jennifer Kirby, "The ICC Court: A Behind-the-Scenes Look,"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Bulletin*, Vol. 16/No. 2 - Fall 2005, p. 9.

7) 오원석, 「ICC 중재규칙(ICC Rules of Arbitration)의 중재위탁요지(Terms of Reference)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학회지」, 제3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6, pp. 81-106; 오원석, 「ICC 중재에서 중재법원의 중재판정 검토(Scrutiny)제도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7, pp. 1-15; 오원석, 「ICC중재에서 중재비용의 균등부담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2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pp. 125-148; 오원석, 「ICC중재에서 중재비용의 결정과 할당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학회지」,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pp. 145-164; 오원석 안건형, 「ICC 중재에서 중재법원의 제3중재인 선정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3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8, pp. 1-23.

8) 김영학, 「특제상사분쟁해결을 위한 ICC 중재제도의 우월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 2007, pp. 1-129; 신정식 김용일 박세훈, 「ICC중재의 주요특징과 KCAB 중재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학회지」,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pp. 121-144; 최장호, 「ICC 국제중재법원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체제와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무역학회지」, 제25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0, pp. 391-413.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까지 병행된 논문은 찾아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재법원의 실체와 역할을 문헌 연구만으로 검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재법원이 실제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면의 정보까지 전달하고자 한다. 나아가 ICC 중재에서 중재법원의 역할을 참고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 상 사무국, 중재관정부 그리고 국제중재위원회(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ittee; 이하 국제중재위원회'라 한다)가 어떻게 업무분장이 되어야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화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향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개정 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II. ICC 중재조직의 구성과 역할

### 1. 중재법원

중재법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법원은 아니다.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의 일부인 법원과는 달리 중재법원은 사건의 심리와 판정을 담당하지 않으며,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법원에 출석하는 일도 없다. 당사자로서는 기껏해야 중재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종종 사무국의 권고사항과 함께 동 중재법원에 제출할 뿐이다.<sup>9)</sup>

중재법원은 ICC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중재사건들을 관리하는 관리기구에 가깝다. 예를 들어, 중재법원은 각 사건의 '임시예납금'으로 알려진 예산을 정하고,<sup>10)</sup> 중재합의의 일응의(prima facie) 존재 여부를 검토하며,<sup>11)</sup> 중

9) 김영학, 전제논문, p. 9.

10) ICC Rules of Arbitration Article 30 (이하 Article'로 약칭하기로 하고 향후 'Article' 또는 Appendix'는 모두 1998년 1월 1일부터 발효한 ICC 중재규칙의 Article 또는 Appendix를 일컫는 것이다.)

11) Article 6(2).

재지를 결정하고,<sup>12)</sup> 중재인들을 확인(confirms)하고 선정하며,<sup>13)</sup> 중재인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sup>14)</sup> 중재판정문의 수준과 강제집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초안을 검토하며,<sup>15)</sup> 사건의 마지막 단계에서 ICC와 중재판정부가 받아야 할 중재비용 확정'으로 알려진 금액을 결정한다.<sup>16)</sup>

국제중재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중재법원의 개념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왜냐하면 중재법원은 복수의 개념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재법원은 1인의 회장(chairman), 9인의 부회장(vice chairman) 그리고 전세계 88개국 126명의 위원(member)들로 구성된 조직을 일컫는 말이다. 나아가 ICC 조직 내의 사무국(secretariat)을 포함하여 전체의 개념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sup>17)</sup>

중재법원의 위원(member)들은 ICC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ICC 이사회(world council)가 선거권이 있는 각 국내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3년 기한으로 선정되게 된다. 중재법원의 위원들은 명목적인(nominal) 사례금을 받을 뿐이다. 위원들은 ICC 중재에서 중재법원에 의해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sup>18)</sup> 나아가, 만일 중재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어떤 식으로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다면, 그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서류도 받아 볼 수 없으며, 중재법원의 논의나 토론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

12) Article 14.

13) Article 7, 8 and 9.

14) Article 11.

15) Article 27.

16) Article 31; Jennifer Kirby, *ibid.*, p. 10.

17) ICC 국제중재법원은 ICC의 별도 조직이 아니라 한 부서(department)이다. 회장은 상근직이며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국은 약 70 여명에 이르며 ICC 전체 조직 중 가장 큰 부서이다. 그 뒤로 Finance, Administration and Personnel 부서가 30 여명, Policy and Business Practices 부서가 약 20 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 부서의 인원이 ICC 조직 전체 인원의 70%를 상회한다. 이 외에도 ICC의 각종 컨퍼런스, 세미나 등을 담당하는 Events 부서, Communication 부서 등이 존재한다.

18) Appendix II, Article 2(2). 위원들은 그러나 ICC 사건의 대리인이나 당사자 선정 중재인으로는 활동할 수 있다. 단, 중재법원의 의장은 Appendix II, Article 2(1)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ICC 사건의 대리인이나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Jennifer Kirby, *ibid.*, p. 10. 각주 12 재인용); 참고로, 카이로 국제지역중재센터의 사무총장은 수요일과 일요일만 출근하는 비상근직으로서 중재인 뿐 아니라 대리인으로도 활동하는 것은 ICC 국제중재법원과 매우 대조적이다.

는 때에는 그 자리를 떠났다가 논의가 끝나면 다시 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다.<sup>19)</sup>

다음으로 중재법원의 역할, 즉 위원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ICC 중재의 관리 감독적인 역할을 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위원들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ICC 본관의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위원회의(committee session)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총회(plenary session)에서 사무국이 의제(agenda)로 올린 문제들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중재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총회가 개최되는 날 오전 9시 30분에는 위원회의도 열려 하루 종일 회의가 이루어진다.<sup>20)</sup>

#### (1) 위원회의(Committee Session)

위원회의에는 회장 또는 회장의 수권을 받은 부회장 9인 중 1인, 그리고 두 명의 위원을 합쳐 총 3인이 참석하여 의사결정을 내린다.<sup>21)</sup> 위원회의는 특별히 중요한 사안으로 총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들을 다루며 필요한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데, 대부분 60개가 조금 넘는 사건들이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sup>22)</sup>

중재법원은 관례적으로 위원회의나 총회에 위원들이 직접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위원들의 자발성을 저해하고 비유럽 거주 중재인들의 참석을 제한케 하는 요인이 되었다.<sup>23)</sup> 그러나 금년 초에 개최된 한 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향후 위원회의 뿐 아니라 총회에서도 화상회의를 통한

19) Appendix II, Article 2(4); 위원회의(committee session)나 총회(plenary session) 중에는 위원들이 수시로 회의장을 드나드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심의하는 사건의 회사, 대리인 그리고 중재인들과 같은 로펌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논의가 끝난 후에 들어올 수 있다; Jennifer Kirby, *ibid.*, p. 10.

20) 한 달에 보통 위원회의는 4회, 총회는 1회가 개최되게 된다.

21) 중재법원의 위원은 마치 기업의 사외이사 또는 자문단과 같은 성격과 흡사해 보인다. 각 팀을 담당하고 있는 Counsel들은 각자의 팀에 할당된 사건의 여러 의제들을 정리하여 권고안까지 포함된 자료들을 위원들에게 제출한다.

22) Jennifer Kirby, *ibid.*, p. 10.

23) Yves Derains, Eric Schwartz, *A Guide to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2ed., Kluwer Law International, 2005, p. 24.

비유럽 거주 위원들의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sup>24)</sup>

## (2) 총회(Plenary Session)

총회는 회장 또는 회장의 수권을 받은 부회장 9인 중 1인이 의장역을 맡게 되며 부회장, 위원 등 참석이 가능한 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총회에는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60여명이 넘는 위원(회장, 부회장 포함)들이 참석하기도 한다.<sup>25)</sup>

총회에서는 그 다음 달 개최되는 네 차례의 의원회의에 참석할 위원들을 결정하여 공표하게 된다.<sup>26)</sup>

위원회의와 총회가 진행되는 방식 중에 가장 크게 다른 점 하나가 위원회의에서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 쟁점, 비용관련 정보(예를 들어, 분쟁금액, 관리비용, 중재인 수당 등)와 함께 사무국의 권고사항이 담긴 자료만으로 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반면에, 총회에서는 상기의 자료 외에 위원들 중 그 사건의 보고자(reporter)로 지명된 위원이 보고서를 모든 위원들과 사무국의 참석자들(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총괄고문 그리고 각 사건 담당 counsel들)에게 사전에 제출한 후, 총회에서 이 보고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이 보고서를 경청한 후 다른 참석 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의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중재법원의 회장 또는 의장역이 찬반에 대해 의원들의 거수투표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sup>27)</sup>

24) 금년 초 한 위원회의에서는 참석이 불가능하게 된 영국의 위원을 위해 화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동안 ICC 중재가 유럽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비유럽 거주 위원들, 특히 아시아 위원들은 파리로부터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위원회의나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향후 화상회의가 확산된다면 이들의 참여가 현저히 늘어날 것이다.

25) Jennifer Kirby, *ibid.*, p. 10; Jennifer Kirby는 총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30-50명 정도 된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바캉스 시즌인 7월과 8월 그리고 12월에는 20여명에 못 미치는 인원이 참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매년 9월에는 Working Session이 개최되는데 이는 위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회의로서 ICC 중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제들을 다루게 된다. 이 회의에는 ICC의 인턴들도 참가할 수 없다. ICC의 인턴들은 모든 임원회의(staff meeting), 위원회의 그리고 총회에 모두 참석할 수 있다. 이 Working Session에 참석한 위원들은 총회에도 함께 참석하여 이 때 참여하는 위원들은 60여명이 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6) Appendix II. Article 4(3).

총회에서는 통상 중재인기피 결정과 판정문의 검토문제가 다루어진다. 한 총회에서 10여건 이내의 사건들이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17건에 달하는 문제들이 다루어진 적도 있다.<sup>28)</sup>

중재인기피 문제는 중재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매우 희박하였으며,<sup>29)</sup> 중재인기피 문제 이외에 중재법원의 주도 하에 중재인 교체 문제<sup>30)</sup>가 다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중재판정문의 검토는 분쟁금액이 현저히 높거나 매우 어려운 사안을 담은 복잡한 판정문, 소수의견(dissenting opinion)이 기재된 판정문 그리고 정부 또는 정부 관련 기업들이 연루된 사건의 판정문이 다루어진다.

## 2. 사무국(Secretariat)

### (1) 사무국의 구성

중재법원의 사무국은 사무총장<sup>31)</sup>의 지휘 아래 ICC의 본부에 두고 있다.<sup>32)</sup>

27) 사무국의 사건담당 Counsel들이 직접 위원들 중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에게 부탁을 하나, 휴가철이나 총회에 너무 많은 의제들이 다루어지는 회기에는 보고자로 나서 줄 위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보고자로 나서는 위원들은 그 사안의 검토에 대해 보수를 지급받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가령, 500 페이지가 넘는 일개 국가가 연관된 건설사건) 판정문의 검토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몇몇 위원들은 좀 과장해서 말하면, 거의 매 총회에서 보고자로 나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였다.

28) 총회는 매달 마지막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데, 통상 7-9건 정도가 휴식시간 없이 다루어지며 대개 3시간 정도가 소요되나 어떤 경우 6시가 훨씬 넘는 시간까지 끝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29) 2006년 ICC에 접수된 기피 사건은 18건이었으며, 다수(multiple) 도는 반복 기피신청까지 합치며 총 38차례 시피신청이 이루어졌다. 이 중 기피신청인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2건에 불과하였다(2006 Statistical Report,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Bulletin*, Vol. 18, 2007, p. 9).

30) Article 12(2).

31) 현 사무총장은 Jason Fry라는 뉴질랜드 출신의 변호사이며 2007년 11월, 사무총장 취임 직전까지 Clifford Chance LLP 파리 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한 바 있다. 현 사무부총장(Deputy Secretary General)은 호주 출신의 Simon Greenberg로 2008년 1월 취임하였다. 2000년대 초반 ICC 국제중재법원 사무국의 Asia-Pacific팀의 Assistant Counsel로 근무한 바 있으며, 사무부총장 취임 전까지 Dechert LLP 파리 사무소의 변호사로 근무한 바 있다.

32) Article 1(5).

중재법원의 위원들은 ICC에 의해 고용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재법원에 전임의(full-time)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사무국은 중재법원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작성 준비하고, 중재절차 도중 필요하다면, 당사자들 그리고 중재인들과 연락을 취하며,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까지 중재신청서 및 기타 다른 서류들을 접수하고 통지하며, 나아가 매일매일 중재사건들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중재법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한다.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들과 중재인들은 중재법원과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없고 모든 연락은 사무국과 하여야 한다.<sup>33)</sup>

사무국을 살펴보면, 사무총장이 사무국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사무부총장은 중재사건 업무 등 사무국 내부업무에 치중하는 반면, 총괄고문(General Counsel)은 ICC 조직 내의 다른 부서와의 조율, 인턴 선발 및 관리, ICC 조직 외부와 관련된 문제 등을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중재법원의 회장(Chairman)직은 비상근 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ICC의 공식적인 국내외 출장 외에는 사무실을 지킨다는 사실이다. 워낙 공식적인 행사가 많아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 비상근 직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사무국은 현재 6개 팀이 중재사건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사무국 내부에서는 프랑스팀, 독일팀, 이탈리아팀, 미국팀, 남미팀, 아시아퍼시픽팀으로 부른다. 남미팀과 아시아퍼시픽팀을 제외하면 각 팀은 Counsel들의 국적을 따라 부르는 경향이 있다. 남미팀의 Counsel은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이며, 아시아퍼시픽팀의 Counsel은 호주 출신의 변호사이다. 2007년 6월까지는 스칸디나비아팀 등 7개 팀이 있었는데, 이 팀을 없애면서 다른 팀들의 인원을 보강했다. 2007년 6월까지의 각 팀당 Counsel 1명, Assistant Counsel 2명, 비서 2명 등 5명씩 7개 팀을 합치면 총 35명이었으나, 현재는 Counsel 1명, Assistant Counsel 3명, 비서 2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ICC 사무국은 최근 루마니아,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동유럽을 넘어 아시아 출신의 변호사들을 Assistant Counsel로 영입한 바 있고, 나아가 홍콩에 ICC 아시아 지부의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의 중재사건

---

33) Yves Derains, Eric Schwartz, *ibid.*, p. 25.

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 (2) 사무국의 업무

중재신청서가 사무국에 접수되면,<sup>34)</sup> 사무총장은 사건을 6개의 팀 중 한 팀에 배당하게 된다. 이때 사무총장은 언어 또는 중재언어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언어, 당사자와 대리인의 국적, 준거법과 각 팀의 사건수를 고려하여 그 사건을 담당할 팀을 결정하게 된다. 각 팀마다 통상 150건에서 200건 정도가 계류되어 있다.

사무국의 업무는 관정부가 구성되어 사건서류들을 인수하기 전까지, 사건 초기단계에 가장 업무량이 과중하다. 이 기간 동안, 사무국은 해결되지 않은 절차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중재판정부 구성을 위하여 수시로 당사자들과 연락을 취하게 된다.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절차적 문제들, 예를 들어, 관할권, 중재인의 수와 신원(identity), 중재지 등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면 사무국의 업무는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중재법원이 결정하여야 할 문제들이 적어지기 때문이다.<sup>35)</sup>

반면에 당사자들이 상기의 문제들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사무국이 다툼이 있는 절차적 쟁점들에 대해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을 제출하게끔 조율하여야 하고 중재법원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쟁점들에게 대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증가하게 된다.<sup>36)</sup>

중재법원은 사무국이 "최초제출서"(First Submission; 이하 '최초제출서'라 한다)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각 사건에 있어 최초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각 사건 담당 팀의 Counsel들은 위원회의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한다.<sup>37)</sup> 이 문서에서는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신원을 기재하고, 중재조항을 설

34) 사무국에는 중재신청서를 접수만을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있으며, 이 직원은 10 여년 이상 이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고 사건통계 작성의 업무도 부가적으로 맡고 있다. 중재신청서는 사무국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는 없고 우편 및 특송업체(courier)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35) Jennifer Kirby, *ibid.*, p. 11.

36) *Ibid.*

37) 이 서류들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직원회의(staff meeting)에 상정되어 논의를 거친 후, 그 다음 주 금요일 오전 9:30에 개최되는 위원회의에 제출된다. 논각을 다루는 의제들은 "Tabled matter"라는 제목으로 직원회의에서 논의가 된 후 그 주

명하며 사건의 전후 사정과 당사자들의 개별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사건의 재정정보, 예를 들어, 분쟁금액, 관리비용, 중재인수당 그리고 당사자들의 예납 현황 등이 담긴 정보들도 정리되어 있으며, 사무국의 권고안까지 포함되어 있다.<sup>38)</sup>

각 사건에 있어 최초제출서 외에 중재법원이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사무국은 중재법원의 검토를 위해 의제를 작성하게 되고,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그리고 총괄고문과 최종적으로 협의 후 작성을 완료한다. 위원회의에는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수많은 사안들이 상정되기 때문에 서류의 양이 두 개의 바인더를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바인더는 위원회 개최 일주일 전에 조함이 완료되어 참석 위원들에게 보내진다. 이는 참석하는 위원들이 사전에 사안들을 숙독하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위원회의에서는, 참석위원들이 바인더에 있는 서류들을 보며 각 사건 담당의 Counsel들의 설명을 들어가며 바인더에 첩해져 있는 순서대로 차례차례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sup>39)</sup>

사무국은 일단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어 모든 사건 서류가 판정부에게 전달된 후부터는 당사자, 대리인 그리고 중재판정부의 질문에 응대하거나 중재비용의 예납과 관련한 재정적인 문제들을 모니터하므로 업무 부담이 판정부 구성 전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중재비용 예납 및 정산에 관련된 부분은 전적으로 Assistant Counsel들의 업무이며 Counsel들은 이 부분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ICC 중재규칙 또는 절차적 문제점과 관련한 당사자 또는 중재인의 질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사건을 담당하는 Assistant Counsel이 답변하고 있으나 문서의 응대는 Counsel의 검토 승인을 득한 후 발송되고 있고, 중요하고 복잡한 전화상의 응대는 Counsel들이 주로 하고 있다.

중재판정문 초안이 사무국에 전달되는 순간 사무국은 다시 분주해지기 시

---

금요일, 즉 이를 뒤에 개최되는 위원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38) Yves Derains, Eric Schwartz, *ibid.*, p. 26.

39) Jennifer Kirby, *ibid.*, p. 12; 이 자리에는 각 팀의 Counsel들이 참석하고 Assistant Counsel들은 참석하지 않는다. 다만 Counsel이 부재시에는 그/그녀를 대신하여 Assistant Counsel들이 참석하게 된다. 나아가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총괄고문도 참석하여 각 Counsel들의 권고안이 위원회의에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작한다. Assistant Counsel들은 원칙적으로 판정문 검토를 하지 않는다.<sup>40)</sup> 판정문 초안의 검토는 Counsel들의 몫이다.

### Ⅲ. 중재법원의 역할

중재법원은 위원회의 또는 총회를 통해 1) 임시예납금의 결정, 2) 중재합의의 일응의 존재 여부 판단, 3) 중재판정부 구성, 4) 중재인기피, 5) 중재판정문 검토, 6) 그 외에 중재비용 및 중재인수당의 확정, 기한의 연장 등 기타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 1. 임시예납금(provisional advance)의 결정

중재신청을 할 때, 신청인은 신청요금(filing fee)으로 미화 2,500달러를 납부하여야 하며 일단 납부되면 이는 신청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금액이다.<sup>41)</sup> 중재신청서와 신청요금이 납부되면, 사무총장은 중재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임시예납금을 정하게 되는데, 이 비용은 중재위탁요지서(terms of reference) 작성단계까지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금액으로, 중재법원에 의해 결정되는 예납금(advance on costs)은 이 임시예납금이 누적되어 계산된다. 다시 말해, 신청인이 신청요금 미화 2,500달러와 임시예납금을 이미 납부하였다면, 중재법원에 의해 결정된 예납금에는 신청요금과 임시예납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예납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분쟁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재량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42)</sup> ICC 요율표에 규정

---

40) 팀별로 사정에 따라 Assistant Counsel이 판정문 검토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사정으로 판정문 검토는 전적으로 Counsel들의 몫이다. 그런데, ICC 사무국 내에는 2달 또는 예외적으로 3달 기간의 인턴들이 상주하면서 각 팀에 배속되어 그들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인턴들은 각 판정문 초안의 초독을 하여 오다나 계산 착오 등을 찾아내기도 하고 중재법원 위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코멘트를 작성하여 Counsel에게 전달하고 이를 참고하여 Counsel들은 위원회나 총회에 제출할 의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41) Appendix III, Article 1(1).

42) Appendix III, Article 1(2); 분쟁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사무국의 관행은 분쟁금

된 관리비용 및 중재인 보수 각 하한선의 50%를 합친 금액을 임시예납금으로 정하는 것이 사무국의 관행이다.

사무국은 이 임시예납금이 완납된 후에야 사건 관련 모든 서류를 해당 중재판정부에게 송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재위탁요지가 서명 또는 중재법원에 의해 승인되고 임시일정표(provisional timetable)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중재규칙 제30조 제4항에 따라, 예납금이 모두 완납된 경우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sup>43)</sup>

반대신청이 제출되게 되는 경우,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중재법원은 본신청과 반대신청에 대해 각기 다른 별개의 예산(budgets)을 정할 수 있다.<sup>44)</sup> 그러한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이 청구한 금액에 따라 정해진 개별 예납금을 지급할 책임을 갖는다.<sup>45)</sup> 일방당사자가 사무총장에 의해 정해진 기한 내에 자신의 청구에 대한 예납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 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어진다. 그러나 향후 그 청구를 다시 청구하는 데는 문제되지 않는다. 본신청과 반대신청이 있을 경우를 가정해 보자. 만일 어느 신청인이 자신의 청구에 대한 예납금을 완납하고 피신청인이 반대신청에 대한 예납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청구에 대해 답변하고 방어할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sup>46)47)</sup>

나아가, 예납금은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분쟁금액의 증감, 예상되었던 중재인 비용의 변화, 또는 중재절차의 전개되는 복잡성과 어려움을 고려하여 절차진행의 어느 단계에서도 재조정을 할 수 있다.<sup>48)</sup>

원칙상 예납금의 재조정은 예납금의 증가나 감소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분쟁금액이 중재의 초기단계에서 줄어드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중재진행 과정에서 분쟁금액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예납금의 증가로

---

액을 미화 100만 달러로 정하여 중재비용을 계산하는 것이다.

43) Appendix III, Article 1(3).

44) Article 30(2).

45) Appendix III, Article 1(7).

46) Article 15(2), Article 21(3)

47) Jennifer Kirby, *ibid.* p. 13.

48) Appendix III, Article 1(10).

이어지지만 중재위탁요지 작성 후 발생하는 분쟁금액의 감소는 그것이 중재인의 작업량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없는 한 예납금의 감소는 매우 이례적으로 발생한다.<sup>49)</sup> 일단 사무국이 권고하고 중재법원에 의해 결정되거나 재조정된 예납금액은 일단 완납되면 당사자들에게 거의 반환되지 않고 최종 예납금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불만을 사는 경우도 발생한다.<sup>50)</sup>

## 2. 중재합의의 일응의 존재 판단

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가장 먼저 결정하게 되는 사항은 최초제출서(first submission) 상의 일응의(*prima facie*) 중재합의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sup>51)</sup> 중재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중재합의의 존재, 유효성, 범위 등에 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변을 제기한 경우에, 본 규칙에 의한 중재합의가 존재할 수 있다고 일견 명백하게 인정된다면, 중재법원은 본안에 관한 주장의 인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중재절차의 속행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양당사자 간에 ICC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나, 피신청인이 중재신청개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중재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신청인이 사전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ICC 중재로 회부되는 것에 합의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무국은 통

49) 오원석, 「ICC중재에서 중재비용의 균등부담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2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3. 31., p. 136.

50) 2007년 12월 중순에 개최되었던 한 위원회의에서는 한 위원이 사무국이 권고했던 예납금 재조정 금액에 대해 모두 대폭 삭감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 위원은 한 번 재조정된 금액은 재조정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이 철회되거나 화해판정으로 종결되어도 당사자들에게 반환되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재조정 금액을 정함에 있어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주문하였다. 사무국의 입장에서는 만일 충분한 예납금이 완납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되면 당사자로부터 부족한 예납잔금을 받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도 동시에 존재한다.

51) 이 최초제출서에는 동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중재합의 존부 문제 뿐 아니라, 중재판정부 구성, 중재지의 결정, 예납금의 결정 등의 의제도 다루어지게 되며,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중재법원이 결정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다룰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다.

상 ICC 중재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중재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나아가 사무총장은 중재신청서가 송달될 때, 동 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임시예납금도 결정하게 된다.<sup>52)</sup>

동 규칙 제6조 제2항은 피신청인만 항상 원용하여 중재합의의 존부에 관해 다투는 것은 아니다. 신청인도 피신청인이 만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새로운 당사자들의 참여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에 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상기 조항을 원용할 수도 있다.<sup>53)</sup>

중재합의 존부 문제는 staff meeting에서도 가장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주제 중의 하나이며, 사무국의 입장에서는 중재법원이 중재합의가 존재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광범위한 리서치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합당한 법률적 논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한다.

중재법원의 태도도 실질적인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를 가능하면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법률가들의 견해보다는, 중재합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여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도록 하자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sup>54)</sup>

그러나, 만일 중재법원이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중재법원은 당사자에게 더 이상 진행절차가 진행될 수 없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 당사자는 관할 법원에 구속력 있는 중재합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다.<sup>55)</sup>

### 3. 중재판정부 구성

일단 분쟁이 중재에 회부되기로 결정이 되면, 올바른 중재판정부를 선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는 특정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중재절차의 명성과 격식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선택이다.<sup>56)</sup>

52) Robert Briner, "Implementation of the 1998 Rules,"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Bulletin*, Vol. 2, 1997, p. 8.

53) Yves Derains, Eric Schwartz, *ibid.*, p. 80.

54) *Ibid.*, p. 79.

55) Article 6(2).

56) 오원석 안건형, 「ICC 중재에서 중재법원의 제3중재인 선정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

국제중재에 있어서 중재인의 수는 대체적으로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57)</sup>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수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재법원이 이를 정하게 된다.<sup>58)</sup> 대체로 분쟁금액이 크고 사건이 복잡할수록 3인판정부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분쟁금액이 소액이고 내용이 덜 복잡할수록 단독중재인에게 회부되는 경향이 있다.<sup>59)</sup>

ICC 중재사건에서 중재인으로 선택되어 수입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명 (nomination)과 선정 (appointment)을 통해서다.

#### (1) 지명 (Nomination)

분쟁이 단독중재인에게 회부될 때,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공동 지명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중재법원이 단독중재인을 선정한다.<sup>60)</sup>

분쟁이 3인의 중재인에게 회부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신청서 및 답변서를 통하여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고 중재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방당사자가 중재인을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재법원이 이를 선정하고, 중재판정부의 의장으로 활동할 제3중재인은 당사자들이 그 선정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법원이 선정하게 된다. 당사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예를 들어, 당사자선정 중재인들이 제3중재인을 공동지명하기로 하는 경우, 그 제3중재인은 중재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sup>61)</sup>

---

지」 제33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8, p. 3; A. Redfern, M. Hunter, N. Blackbay, C. Partasides,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4ed., Sweet & Maxwell, 2004, p. 182.

57) Article 2, Article 8(1).

58) Article 8(2).

59) ICC 사무국 French Team의 Counsel인 Eliseo Castineira에 따르면, 분쟁금액만을 놓고 중재인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미화 500만 달러를 기준으로 중재인의 수를 구분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논자의 경험으로는 Eliseo Castineira의 사건은 약간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보이며, 분쟁금액에 대해서는 사무국의 명확한 관행은 정립되어 있지 않고, 중재법원이 중재인의 수를 고려할 때 분쟁금액을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사실이나 사실관계, 법률관계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진 후 중재인의 수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60) Article 8(3).

61) Article 8(4).

ICC 사무국은 중재인 후보자들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모든 지명된 중재인이 이력서(curriculum vitae)와 독립성 진술서(statement of independence)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독립성 진술서에는 당사자들의 눈에 지명된 중재인 후보자의 독립성에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사실 또는 사정이 고지되어야 한다.<sup>62)</sup>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사항은 고지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sup>63)</sup>

일단 지명된 중재인 후보자가 이력서와 독립성 진술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반송하면, 사무국은 이 서류들을 당사자들에게 송달하게 되고, 이 후보자가 어떠한 사항을 고지하였다면,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가진다.<sup>64)</sup> 당사자들이 어떠한 의견도 개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후보자는 중재법원 또는 사무총장에 의해 확인(confirmed)된다.<sup>65)</sup> 만일 일방당사자가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 중재법원은 그 고지내용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그 후보자를 확인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sup>66)</sup>

## (2) 선정 (Appointment)

중재법원이 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지명절차와는 다르게 진행된다. 중재법원이 제3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 중재법원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ICC 국내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중재법원이 그 추천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나, 위의 국내위원회가 중재법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추천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법원은 동일한 추천 요청을 반복하거나 다른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sup>67)</sup>

이때 당사자들은 국내위원회의 선택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도 받지 아니하

62) Article 7(2).

63) Jennifer Kirby, *ibid.*, p. 14.

64) Article 7(2).

65) Article 9(1), Article 9(2).

66) Jennifer Kirby, *ibid.*, p. 14; 일방당사자가 지명된 중재인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 사무국은 통상적으로 지명된 중재인 후보자가 아닌 당사자들에게만 의견을 묻는다. 이는 중재인기피 절차에서는 사무국이 그 해당 중재인에게도 의견을 구하는 것과는 대비된다(Jennifer Kirby, *ibid.*, 각주 42 재인용).

67) Article 9(3).

는데, 이는 중재인 후보자 선정에 방해 또는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sup>68)</sup>

중재법원이 제3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사건 팀에서 당사자들의 국적, 중재언어, 중재지 그리고 준거법 등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국내위원회를 선택하고 이를 의제(agenda)로 작성하여 Staff Meeting에서 논의함으로써 내부 조율을 거치게 된다. 일단 내부회의를 거친 제3중재인 관련 의제들은 위원총회에서 3명의 위원들에게 보고되고 사무국의 권고안을 중재법원이 승인해 주도록 권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중재법원에서 국내위원회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무국은 해당 국내위원회에 분쟁의 성격, 준거법, 중재지, 중재언어, 분쟁금액, 배석중재인의 국적(3인판정부의 경우)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중재인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다.

일단 국내위원회가 추천을 희망하는 후보자를 찾은 경우, 그 국내위원회는 그 후보자에게 이력서와 독립성 진술서 양식을 송달한다. 그 후보자가 그 양식들에 기입을 완성하면, 국내위원회는 그 완성된 양식을 사무국에 송달하게 된다.

그런데 만일 그 후보자가 독립성 진술서 양식에 어떠한 고지를 하게 되는 경우, 사무국은 일반적으로 그 국내위원회에 다른 후보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왜냐하면 중재법원은 그 모든 선정에 있어서 완벽한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중재법원의 중재인 선정 시, 당사자들은 선정 전까지는 그 중재인의 독립성 진술서와 이력서를 받아보지 못하는데, 실무적인 관점에서 살펴건대, 조건부(qualified) 독립성 진술서에서 요구되어지는, 반대제기 가능성을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기한의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sup>69)</sup>

아마도 중재인 후보자의 확인이 아닌 선정 시의 조건부 독립성 진술서에 대한 다른 접근 방법으로 인한 혼란 때문에, 중재인 후보자가 조건부 독립성 진술서를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 의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68) E. Schlfier, H. Verbist, C. Imhoos, *ICC Arbitration in Practic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5, p. 54.

69) Anne-Marie Whitesell, "Independence of Arbitrators,"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Bulletin*, 2007 Special Supplement, p. 12.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ICC 통계를 보면, 조건부 독립성 진술서를 제출한 당사자 또는 배석중재인으로 지명된 중재인 후보자의 대다수가 중재법원에 의해 확인되었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1,055명의 중재인들이 조건부 독립성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중 925명이 중재법원 또는 사무총장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130명만이 중재법원에 의해 확인이 거부되었는데 조건부 독립성 진술서를 제출하여 확인이 거부된 확률은 불과 13.3%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70)</sup>

중재판정부가 완전히 구성되고 임시예납금이 완납되면, 사무국은 모든 서류철을 중재인들에게 송달하게 된다.<sup>71)</sup>

#### 4. 중재인 기피(Challenge) 및 교체(Replacement) 결정

##### (1) 중재인 기피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은 그 독립성의 결여 또는 기타의 이유를 막론하고 기피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배경을 상술한 서면 진술서를 사무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sup>72)</sup> 동 규칙은 기피신청의 근거를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sup>73)</sup> 그렇다고 그 기피의 이유가 되는 이유들을 장황하게 열거하지도 않고 있으며 중재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이유로도 기피를 허가할 수 있는 태생적인(inherent) 권한을 가지고 있다.<sup>74)</sup>

기피신청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피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기피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는 중재인의 선정 또는 확인 통지를 수

70) Ibid., p. 13.

71) Jennifer Kirby, *ibid.*, p. 16.

72) 이는 LCIA 중재규칙 제10조 제2항(중재인은 그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의문(justifiable doubts)을 야기하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당사자에 의해서도 기피될 수 있다.)과 AAA 중재규칙 제8조(일방당사자는 중재인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의문(justifiable doubts)을 야기하는 중재인을 기피할 수 있다.)와 대비된다.

73) Article 11(1).

74) William Craig, William Park, Jan Paulss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rbitration*, 3ed., Oceania publication, Inc, 1998, p. 222.

령한 때부터 30일 이내, 기피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배경을 알게 된 일자가 앞의 통지를 수령한 이후인 경우에는 그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피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sup>75)</sup>

사무국은 기피대상이 된 중재인, 당사자 그리고 다른 중재인들에게도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이 부여되며,<sup>76)</sup> 그 기피신청은 총회에서 결정된다.<sup>77)</sup>

중재법원은 기피신청의 결정에 대한 이유를 당사자들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동 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중재법원은 중재인의 선정, 확인, 기피 그리고 교체에 관련된 결정에 대한 이유를 전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인의 기피와 관련하여서는, 그 의제들이 88개국 126명의 위원들 중 통상 30명에서 45명이 참석하는 총회에서 논의가 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무국은 논쟁(arguments)에 대해 앞으로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숙지가 되고 그들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가 일단 주어지게 되면 당사자와 중재판정부가 제출한 정보들을 담은 서류를 준비하게 된다. 중재법원의 위원들 중 1인은 권고안을 담은 기피신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가 진행되는 중에, 법원 위원들 간에 열띤 토론이 벌어진다. 매우 다양한 많은 의견들이 표출되나, 결국에는 대부분 거의 유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sup>78)</sup>

둘째, 거수에 의한 투표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ICC 시스템은 매우 다양한 법체계와 문화를 경험한 전세계의 대표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ICC의 매우 특징적인 부분이며 다른 중재기관들, 예를 들어, 3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기피신청을 결정하는 것과는 그 다양성과 깊이의 측면에서 차별화된다고 하겠다.<sup>79)</sup>

셋째, 중재법원의 역할은 동 규칙의 적용을 확실하게 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sup>80)</sup> 중재법원은 당연히 이유 제공을 요구하게 되는 재판 관할 상의

75) Article 11(2).

76) Article 11(3).

77) 기피신청에 대한 의제는 의원총회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총회에서만 이루어진다.

78) Anne-Marie Whitesell, *ibid.*, pp. 38-39.

79) *Ibid.*, p. 39.

80) Appendix I, Article 1(1).

권한(jurisdictional powers)을 행사하지 않는다. 사건을 관리함에 있어서, 중재법원의 목표는 국내법원의 소송을 복제하거나 판례제도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의사결정의 일관성이 요구되는 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중재법원의 우선순위는 각 사안별(case-by-case)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sup>81)</sup>

마지막으로, 일단 당사자들이 그들의 분쟁을 ICC 중재로 해결하기로 선택하였다면, 그들은 국제비즈니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특별히 디자인된 분쟁 해결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건들이 창조되어야 한다. 기피신청이 악의 또는 지연의 목적으로 제기되는 경우에, 이유 제공은 아마도, ICC 또는 국내법원에서의 새로운 기피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중재법원의 결정을 공격하게끔 장려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한 ICC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에 의해 14 차례나 기피신청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는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만일 중재법원이 결정들에 대한 이유를 제공한다면, 중재법원은 중재법원의 이유제공에 있어 흠결 또는 누락된 사항들을 찾기 위한 시도의 술책을 장려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sup>82)</sup>

## (2) 중재인 교체

중재인은 사망, 중재법원의 사임의사 수리, 중재법원의 기피신청 인용 그리고 당사자 전원의 요청 등의 사유로 교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sup>83)</sup> 중재법원은 직권으로 중재인이 자신의 직무를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거나 규칙에 따라 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직권으로 중재인을 교체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sup>84)</sup>

중재인의 교체가 고려되어질 때, 중재법원은 교체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알려진 정보를 기초로 대개는 위원회의에서 결정을 한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문제의 중재인, 당사자들 그리고 다른 중재인들은 의견개

81) Anne-Marie Whitesell, *ibid.*, p. 39.

82) *Ibid.*

83) Article 12(1).

84) Article 12(2).

진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그 중재인을 교체할 것인가에 대한 중재법원의 결정은 총회에서 이루어지게 된다.<sup>85)</sup>

요컨대, 동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른 중재법원의 중재인 교체는 대부분 중재인이 절차진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절차가 비상식적으로 지연 되는 경우에 진행된다.

## 5. 중재판정문의 검토(Scrutiny of Awards)

ICC 중재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중재판정문의 검토 제도의 운영이라 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 서명하기 전에 판정문 초안을 중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법원은 판정문의 형식을 수정할 수 있으며, 또 중재판정부의 결정의 자유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실제적 쟁점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그 형식에 관하여 중재법원의 승인을 얻기 전에는 판정을 내릴 수 없다.<sup>86)</sup>

판정문 초안을 검토할 때, 중재법원의 결정은 실제적으로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중재법원이 단순히 판정문 초안을 승인하고 경우이고, 두 번째는 중재법원이 그 판정문을 승인하되 중재판정부로 하여금 당사자들에게 그 판정문을 송달하기 전 마지막으로 수정을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재법원이 중재판정부에게 판정문 초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고 다음 번 회기에서 다시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정된 판정문 초안을 제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sup>87)</sup>

중재법원의 판정문 초안에 대한 검토 권한은 어떤 중재적 혹은 사법적 역할보다 감독적(supervisory) 내지는 권고적 기능을 반영하고 있다. 중재법원은 중재인에게 판정문 초안에 대한 수정 제의를 받아들일도록 강요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중재인도 중재법원에 그 중재판정을 승인하도록 강제할 수

---

85) Anne-Marie Whitesell, *ibid.*, p. 34; 동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교체가 결정된 사건의 수는 2003년 3건, 2004년 2건, 2005년 4건 그리고 2006년에 3건이었다. 이 통계에는 동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기피와 사임 후의 교체는 포함되지 않았다(각주 34 재인용).

86) Article 27; 여기서 판정이라 함은 부분(partial), 임시(interim) 그리고 최종(final) 판정 모두를 일컫는다.

87) Jennifer Kirby, *ibid.*, p. 17.

없기 때문에 양자 간에 이론적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sup>88)</sup>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례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중재법원과 중재인 간에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결국 한쪽에서 양보를 하게 되어 큰 문제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사건으로, 양보하는 쪽은 아마도 중재인 측이 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중재법원이 승인을 하지 않고 제출된 판정문 초안을 해당 중재인에게 돌려보내 계속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 중재인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중재법원과 사무국에게 중재인으로서 비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면 향후 중재인으로서 사건 수임에 악영향이 미치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까 생각된다.

위원회의나 총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비용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위원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사건들은 위원들이 위원회의에서 담당 Counsel에게 구두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자신의 바인더에 첨부되어 있는 판정문 초안에 오타나 계산 오류 등을 체크하거나 메모한 뒤 이를 회의가 끝나면 해당 Counsel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ICC 사무국의 관행으로 보였다.

앞에서도 기술하였듯이, 총회에 의제로 상정되는 판정문 검토 관련 사건은 대개 4건에서 7건 정도이며, 분쟁금액이 매우 높고 복잡한 사건, 정부 또는 정부관련 기업들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사건 그리고 소수의견(dissenting opinion)이 첨부된 사건이 다루어진다.

총회는 그 진행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위원회의와 달리, 각 사건에는 위원들 중 1인이 미리 판정문을 받아보고 판정문 요약 및 승인 여부에 대한 권고안까지 포함된 보고서(report)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다. 이 보고서들은 의제들이 담긴 바인더에 함께 첨부되게 된다.<sup>89)</sup> 각 사건의 보고자로 지정된

88) William Craig, William Park, Jan Paulsson, *ibid.*, pp. 375-376; 이 책에서 저자들은 중재인과 중재법원 간의 판정문 초안에 대한 이론적 난관에 봉착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89) 총회의 의제들이 담겨있는 바인더는 사무국이 작성한 사건 요약 및 관련 보고서들은 흰색, 위원들이 사전에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는 보고서는 빨간색, 사무국의 Documentation and Research 부서에서 조사, 작성하는 ICC 관련 전세계 법원 판례라든가 세계적으로 쟁점이 되는 판례들은 노란색 종이로 구분하여 위원들에게 제공된다. 바인더에 첨부되어 있는 각종 보고서들의 용도를 색깔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위원은 자신이 준비한 보고서를 읽고 여기에 덧붙여 참석한 모든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기도 한다. 보고가 끝나면 회장 또는 회장 부재 시 의장역을 맡은 부회장 중 1인은 담당 Counsel에게 미리 제출되어 바인더에 첨부된 보고서 외에 추가적으로 덧붙일 의견이 있는지 묻고, 없으면 참석한 위원들 간의 논의가 이루어진 후, 그 판정문 초안의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단, 중재법원이 판정문 초안을 승인하게 되면, 중재판정부는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판정문에 사인한 후 사무국이 당사자들에게 그 최종 판정문을 송달할 수 있도록 보낸다. 송달은 일반적으로 특송업체(courier)를 통해 이루어진다.<sup>90)</sup>

## 6. 기 타

### (1) 중재비용 확정(fixing the costs of the arbitration)

이미 앞에서 자세하게 기술하였듯이, 중재법원은 사건의 초기단계에서 (1) 중재인보수, (2) 사건과 관련하여 중재인들이 지출한 경비, (3) 중재관리비용 등을 커버하기 위해 지정된 예산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는 단지 예산일 뿐, 중재인들과 ICC가 실제로 얼마를 지급받을 지에 대한 문제는 사건의 마지막 단계에서 중재법원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sup>91)</sup> 이는 보통 '중재비용 확정'(fixing the costs of the arbitration)으로 일컬어진다.<sup>92)</sup>

중재인의 보수는 중재인의 노력, 소요시간, 절차의 신속성, 분쟁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중재법원이 결정하게 되며,<sup>93)</sup> 대개 최종 판정이 내려지는 단계까지 가는 사건은 중재법원의 의해 앞서 결정된 바 있는 관리비용과 중재인보수가 그대로 확정되게 된다.<sup>94)</sup> 만일 중재가 최종판정 이전에 종결되는

---

하는 세심한 배려가 인상적이었고, 이 판례들의 제공은 위원들이 보수를 받지 않고도 참석하게끔 하는 하나의 동기부여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90) Jennifer Kirby, *ibid.*, p. 17.

91) Article 31(1)

92) Jennifer Kirby, *ibid.*, p. 18.

93) Appendix III, Article 2(2).

94) 위원회의에 '예납금의 재고'(reconsideration of advance on costs)라는 제목으로 상

경우에는 중재법원은 중재절차의 단계와 기타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그 재량에 따라 비용을 정할 수 있다.<sup>95)</sup> 중재인의 보수와 비용은 중재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중재법원이 독점적으로 정하게 되며, 당사자들과 중재인 간의 보수에 관한 별도의 협상은 허용되지 않는다.<sup>96)</sup>

중재법원이 중재인 보수 금액을 최종 결정하면 이를 의장중재인 40%, 공동중재인 각 30%씩 지급하는 것이 사무국의 관행이며, 간혹 50:25:25의 비율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 외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 중재인 보수에 대한 총 합계 금액과 지급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사무국은 각 사건의 중재인들에게 사건에 투입한 시간과 내역 그리고 지출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사무국이 취합하여 위원회의나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에 사용하고 이 보고서에는 사무국의 권고안 역시 포함되어 있다.

ICC 중재에서 중재인이 대개 시간당 어느 정도 범위 내의 보수를 받는지에 대한 질문을 사람들이 많은데, 논자의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중재인수당 합계금액이 100,000달러라고 하고, 의장중재인은 투입시간을 250시간, 한 공동중재인은 150시간, 나머지 한 명의 공동중재인은 95시간으로 기재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의장중재인은 다른 공동중재인들은 일을 거의 하지 않고 자기 혼자 다 했다고 사무국에 불만을 토로한 후, 사무국이 위원회의나 총회에서 참석 위원들에게 이를 보고하여 중재법원이 중재인보수 지급비율을 50:25:25로 정해졌다고 하자. 의장중재인은 50,000달러, 공동중재인은 각 25,000달러를 지급받게 된다. 그러면, 의장중재인의 시간당 200달러가 되고, 150시간을 기재한 공동중재인은 시간당 약 167달러가 되며, 95시간을 기재한 공동중재인은 시간당 263달러가 되는 것이다. 요컨대, ICC 중재에 있어 중재인보수의 시간당 효율은 아무런

---

정되는 의제 (agenda)에 대해 일단 중재법원에 의해 금액이 재고되어 예납금의 인상이 결정되면, 최종 판정까지 가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반환되는 금액이 없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중재당사자나 대리인들에게 불만을 사는 경우도 있다.

95) Appendix III, Article 2(6).

96) Appendix III, Article 2(4); Jennifer Kirby, *ibid.*, p. 18.

의미가 없다.<sup>97)</sup>

## (2) 기한의 연장

중재법원이 중재절차 과정에서의 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2가지 있는데 바로 중재위탁요지서(Terms of Reference, 또는 'TOR' 이라고 한다)의 제출 기한<sup>98)</sup>과 중재판정의 기한<sup>99)</sup>, (3) 중재판정의 정정 및 해석의 기한<sup>100)</sup>이 그것들이다. 이 기한의 연장은 총회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없고 모두 위원회의에서 다루어진다.

중재위탁요지서는 당사자와 중재판정부가 서명하여야 하는데, 모든 기록들이 사무국으로부터 중재판정부에 전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재판정부, 당사자가가 모두 서명을 마친 후 중재위탁요지서를 중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최종판정을 내려야 할 기간은 6개월 이내이다. 그 기간은 중재판정부나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중재위탁요지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또는 제18조 제3항<sup>101)</sup>을 적용하는 경우 사무국이 중재판정부에 중재법원이 중재위탁요지서를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오기, 계산착오, 오타 또는 기타 판정문에 있는 유사한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러한 정정은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법원의 승인을 위하여 중재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sup>102)</sup> 중재판정부

97)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 별표 II, 제1조(중재인의 수당)에서는 중재인의 시간당 요율을 미화 250달러에서 500달러의 범위 내에서 사무국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논자는 이 규정이 굳이 두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규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중재인보수가 상당한데 중재인은 투입한 시간을 너무 작게 기재하여 시간당 요율이 미화 2,000불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무국으로서는 역지로 시간당 요율 규정을 맞추기 위하여 작위적으로 중재인의 투입시간을 중재인과 재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98) Article 18(2), 18(3).

99) Article 24(1).

100) Article 29(2).

101) Article 18(3): "환원 당사자가 중재위탁요지서를 작성하는데 불참하거나 또는 그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중재위탁요지서는 중재법원에 제출되어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재위탁요지서가 제18조 제2항에 따라 서명되거나 중재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중재는 수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건의 당사자들도 상기에 언급된 오류의 정정 또는 판정문의 해석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러한 신청은 그 당사자가 판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한 신청서는 중재판정부와 상대방에게도 제공되며, 중재판정부는 상대방이 위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대개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한다. 일단 중재판정부가 정정 또는 해석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상대방의 의견제출 기한의 만료일 이후 30일을 경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또는 중재법원이 결정하는 기간 내에 중재법원에 결정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 세 가지 기한에 대한 의제는 사무국이 각 사건별로 한 페이지 정도로 만들어 중재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이 기한 연장 결정과 관련된 의제는 팀별로 너무 많아서 격주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한 위원회의 때마다 사무국의 6개 팀 중 2팀 또는 3팀씩만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03)</sup> 위원회의 의의 의장(회장 또는 부회장 중 1인)은 기한연장 관련 각 사건 보고서를 한 장씩 읽어 나가면서 의문이 있으면 사무국에 질의를 하면서 계속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sup>104)</sup>

#### IV. KCAB 국제중재규칙의 운영방안 - ICC 중재법원의 역할에 착안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은 점증하는 국제중재 수요에 부응할 목적으로, 주요 국제

102) Article 29(1).

103) 이 기한 연장 관련 보고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명, 중재인, 중재지 그리고 몇 번째 연장인지와 그 동안의 연장에 대한 짧은 경과보고가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받는 엄청난 양의 바인더 중 중재위탁요지서와 중재판정 기한에 대한 보고서가 좀 과장해서 말하면 전체 보고서의 절반은 되는 것 같다. 물론 중재판정문 초안도 이 바인더에 첨부되는데 그러한 판정문 초안은 제외하고 사무국이 작성한 보고서만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 것이다.

104) 논자의 경험으로는 기한 연장과 관련된 결정은 상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으며, 중재법원에 의해서 기한 연장이 거부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기억된다.

중재기관의 국제중재규칙을 검토하여 45개 조문과 부칙 등으로 구성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이하 신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이는 2007년 1월 25일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sup>105)</sup> ICC 중재는 ICC 국제중재법원의 사무국, 국내위원회, 중재법원 그리고 개별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유기적인 협력 하에 운영되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고 하겠다.<sup>106)</sup> 신규칙은 ICC 중재규칙으로부터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인데, ICC 중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중재법원의 개념이나 역할은 신규칙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신규칙은 제1조 제3항에서 중재원이 자체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된 국제중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중재인 기피(제13조), 중재인의 교체 및 해임(제14조)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인 기피와 중재인 교체 해임에 대한 의사결정을 제외하고는 ICC에서 중재법원이 하는 역할을 신규칙에서는 모두 사무국이 맡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몇 가지 점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앞에서 검토하였듯이, ICC 중재에서 중재법원의 역할은 (1) 임시예납금의 결정, (2) 중재합의의 일응의 존재 판단, (3) 중재판정부 구성, (4) 중재인기피 교체 결정, (5) 중재판정문 검토, (6) 중재비용 확정 그리고 (7) 기한의 연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ICC 중재에서 중재법원의 역할들을 참조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신규칙 상 (1) 사무국, (2) 중재판정부 그리고 (3) 국제중재위원회가 어떻게 업무분장이 되는 것이 국제중재의 부흥을 위해 이상적일 것인가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105) 석광현, 「대한상사중재원의 2007년 국제중재규칙의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서울대학교 法學」 제49권 제1호, 서울대학교, 2008, p. 72.

106) Ibid., p. 88; ICC의 국내위원회에 대한 역할은 오원석 안건형, 「ICC 중재에서 중재법원의 제3중재인 선정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3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5면 이하 참조

## 1. 사무국의 업무

ICC 중재에서 중재법원이 맡고 있는 역할 중 대한상사중재원의 사무국이 분장해야 할 업무는 크게 (1) 임시예납금의 결정, (2) 중재비용 확정 그리고 (3) 중재인의 수 결정, (4) 중재합의의 일응의 존재여부 결정, (5) 기한의 연장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 (1) 임시예납금의 결정

신규칙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절차 중에 발생하는 중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이 정한 방식과 기간에 따라 사무국이 정한 예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예납금은 중재절차 중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9조 제2항에서는 '예납금'(advance for costs) 또는 추가 예납금'(supplementary advance for costs)이라는 용어만 발견할 수 있다. ICC 중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시예납금(provisional advance)이라는 개념은 찾아볼 수 없다. ICC 중재에서는 중재신청서가 접수되면 사무총장이 임시예납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상기 금액을 예납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sup>107)</sup> 그러나 신규칙에서는 임시예납금과 예납금 제도가 명백하게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사무국이 정한 방식과 기간에 따라 사무국이 정한 예납금을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 진행을 위한 잠정적인 일정표를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재판정부의 구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국과 당사자들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sup>108)</sup> 따라서 운용의 묘를 살려 사무국은 중재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에게 절차일정표가 작성되기 전까지의 비용을 충당해 줄 임시예납금을 요청하고, 절차일정표가 사무국에 통지되면 예납금을 양당사자가 균등하게 완납하게 하는 방식으

107) ICC 중재에서 임시예납금은 피신청인에게 균등 부담할 것을 요청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은 최초제출서가 위원회의에 상정된 후, 사무국으로부터 예납금(advance on costs)의 완납을 요청받는 경우 신청비용 미화 2,500달러와 임시예납금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고,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급하게 되는 모든 금액을 한 번에 입금해야 한다.

108) 신규칙 제15조 제1항.

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단계별로 중재비용을 완납하게 하면 우선 한 번에 중재비용을 완납해야 할 때 느낄 수 있는 당사자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또한 신청비용과 임시예납금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모두 부담시키게 함으로써 상대방과의 협상을 위한 무분별한 중재신청을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CC 중재에서 임시예납금의 최종 결정은 중재법원이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사무국이 맡아 하고 있고 중재법원의 결정도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 중재원에서는 사무국이 최종적으로 결정해도 무방해 보인다.

## (2) 중재비용 확정

중재인 보수와 관리비용은 이미 신규칙상 별표 I의 제2조의 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별표 II의 제1조 제3항의 표에서는 중재인 보수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사건의 복잡성, 신속성 중재인의 노력, 소요시간 등을 파악하여 중재인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사무국의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라 보기 힘들다. 중재인경비와 관련하여서는 중재인들이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보고 적절한 보상금액을 사무국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장중재인과 다른 중재인들과의 중재인 보수 지급 비율은 ICC에서 관행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40:30:30 비율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예외적인 경우로 50:25:25 비율로 결정하면 되므로 그리 어려운 업무로 보이지 않는다.

상기의 사실들을 살펴건대, 중재비용 확정 관련 문제는 사무국의 업무분장 범위 내에 두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나아가 제3장에서 이미 기술하였지만, 신규칙 별표 II, 제1조(중재인의 수당)에서 중재인의 시간당 요율을 정해 놓은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사료된다.

## (3) 중재인의 수 결정

신규칙(제11조)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단독중재인의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어느 당사자라도 사무국에 3인의 판정부 구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무국이 분쟁의 규모, 복잡성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3인의 중재인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CC 중재에서는 중재인의 수를 중재법원이 결정하나, 실제에서는 사무국에 의해 권고되는 중재인의 수가 중재법원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재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사무국이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4) 중재합의의 일응의 존재 여부 결정

ICC 중재규칙 제6조 제2항은 어느 일방이 중재합의의 존재, 유효성, 범위 등에 관하여 항변을 제기한 경우에, 중재합의가 존재할 수 있다고 일견 명백하게 인정된다면, 중재법원은 본안에 관한 주장의 인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중재절차의 속행을 결정할 수 있다. 물론 중재판정부의 관할에 관한 모든 결정은 중재판정부 자신이 내려야 한다.

여기서 잠깐 ICC 실무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ICC는 중재신청서를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없다. 따라서 사무국이 중재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서류들을 살펴보고 조언을 해 주지 않는다. ICC 사무국은 이러한 일방당사자에 대한 도움이 상대방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재합의가 명백하게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중재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중재법원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대한상사중재원은 거의 대부분, 물론 우편접수도 있기는 하지만, 당사자 또는 대리인들이 직접 중재신청서를 접수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때 중재부서의 직원 1인이 중재신청서 상의 중재합의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게 되고, 중재합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한 신청인으로부터 하여금 중재판정부에 의해 사건이 관할권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알려 주는 것이 관행이다. 물론 사무국은 그러한 신청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절차가 진행되어 중재판정부에게 중재합의 존부 문제에 대해 판단받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그러하다면 중재신청을 접수하고 절차를 진행시키게 된다.

물론 신규칙(제19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도 중재판정부가 중재합의의 존

부 및 유효성 그리고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의 존부나 유효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5) 기한의 연장

ICC 중재에서 중재법원은 중재위탁요지서 제출 기한, 중재판정 기한 그리고 중재판정의 정정 및 해석 기한 연장 여부를 중재법원이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에서는 중재위탁요지서라는 개념이 없고 절차일정표(제15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중재판정의 정정 및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신규칙(제36조 제1항)에서 중재판정부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오류를 제외한 일방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절차일정표 제출 그리고 중재판정의 기한에 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사무국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sup>109)</sup>

## 2. 중재판정부의 업무

ICC 중재에서 중재법원이 맡고 있는 역할 중 중재판정부가 분장해야 할 업무는 크게 (1) 중재지 결정, (2) 중재언어 결정 그리고 (3) 중재합의 존부 및 유효성 판단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 (1) 중재지 결정

ICC 중재에서는 중재지를 중재법원이 결정하고 있다. 이는 ICC 중재에 있어서 독특한 중재인 선정방식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간파할 필요가 있다. ICC 중재에서는 단독 또는 의장중재인을 선정할 경우 국내위원회(national committee)에 추천을 의뢰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법원의 국내위원회 선택 시 중재지는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 것이다. 분쟁 당사자 간에 중재지의 합의가 부존재하는 경우, 중재법원은 중재지 또는 중재지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에 존재하는 국내위원회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109) 논자의 경험으로는 ICC 중재에서도 위원회의 기한연장 관련 결정은 다소 형식적인 절차라는 생각이 들었다.

신규칙(제18조 제1항)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지는 서울로 하되, 중재판정부가 당해 사안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장소가 더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CC 중재에 있어 독특한 중재인 선정방식이나 신규칙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현실에서는 중재지는 중재판정부의 업무 영역으로 두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 (2) 중재언어 결정

신규칙(제24조)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을 때에는 중재판정부가 계약 언어를 비롯한 모든 관련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중재언어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CC 중재에서도 중재언어의 결정은 중재법원이 개입하지 않고 중재판정부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실무에서도 중재판정부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3) 중재합의 존부 및 유효성 판단

신규칙(제19조)이나 ICC 중재규칙(제6조)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중재합의의 존부 및 유효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사무국이나 국제중재위원회가 아닌 중재판정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 3. 국제중재위원회의 업무

ICC 중재에서 중재법원이 맡고 있는 역할 중 국제중재위원회가 분장해야 할 업무는 크게 (1) 중재인 후보자 추천(중재인 선정), (2) 중재인 기피 및 교체 결정 그리고 (3) 중재판정문 검토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 (1) 중재판정부 구성

중재판정부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중재인의 확인(confirmation)과 선정(appointment)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ICC 중재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중재법원과 국내위원회의 존재와 역할과도 관련되는

부분이다.

#### 1) 중재인 확인

ICC 중재규칙(제9조 제2항)은 사무국의 사무총장이 공동중재인, 단독중재인, 중재판정부의 의장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총장은 이 문제를 중재법원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규칙에서는 제13조에서 중재인 기피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중재인 선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12조에서 중재인의 확인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또한 독립성 진술서(statement of independence)에 대한 규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신규칙이 중재판정부의 구성 방식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제정한 이상 ICC와 같은 선도적인 국제중재기관의 절차를 유사하게 채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신규칙에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중재판정부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외부에 비칠 수 있도록 사무국에 의해 확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독립성 진술서에 중재인의 고지(disclosure)가 있는 경우 국제중재위원회에 이 문제를 회부하여 국제중재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2) 중재인 선정

ICC 중재규칙(제9조 제3항)은 단독 또는 의장중재인의 선정 시 중재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국내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신규칙에서는 중재인 선정 권한을 모두 사무국에 부여하고 있다.

논자는 중재인 선정 권한을 과감히 국제중재위원회에 부여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다시 말해, 중재인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중재위원회가 ICC 중재 하에서의 국내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자는 취지이다.

사무국은 중재인 선정 시 국제중재위원회에 그 사건에 적합한 중재인 후보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추천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아들여 중재인을 선정하게 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무국이 그 추천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사무국이 정한 기간 내에 국제중재 위원회가 추천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무국이 직접 선정하도록 이원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데, 중재인 후보자 추천권이 국제중재위원회에 부여될 경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ICC 중재규칙 부록(Appendix II, 제2조 제1항)은 중재법원 사무국의 의장 및 위원들은 ICC 중재에 회부되는 사건에서 중재인이나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고, 제2조 제2항에서는 중재법원은 부의장이나 법원 위원들을 중재인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있으면 중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ICC 중재에서는 중재법원의 회장은 중재인, 심지어 대리인으로도 활동할 수가 없다.

대한상사중재원은 ICC의 예를 준용하여 국제중재위원회 회장이 중재인과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재원장을 국제중재위원회의 회장직을 맡길 수도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결정은 외부적으로 국제중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구심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나아가 국제중재위원회에 사무국의 직원이 포함되는 것도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사건으로는 국제중재위원회의 회장직은 외부의 국제중재 전문가에게 맡기고 국제중재위원회 회장에게 중재인 후보자 추천 권한을 주되 회장은 중재인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중재위원회 회장은 대부분의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전문성과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품을 겸비하였다고 인정되는 원로 인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중재위원회의 위원들 사이에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나친 간섭보다는 지원과 조율의 기능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의 국제중재 전문가들 사이에 선의의 경쟁이 조성되고 이는 결국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2) 중재인 기피 및 교체 결정

신규칙(제1조 제3항)은 중재원이 자체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된 국제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중재인의 기피(제13조) 및 교체(제14조)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적절하게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신규칙의 문면 상 국제중재위원회의 유일한 업무는 중재인의 기피 및 교체에 관한 의사결정 시 단지 자문만을 제공하는데 그치고, 최종적으로 중재원이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규칙(제10조 제3항)은 나아가 중재인의 선정, 교체, 해임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사무국의 결정이 종국적이며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1조 제3항의 중재원과 제10조 제3항의 사무국을 굳이 분리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이에 반해, ICC 중재규칙 제11조(중재인 기피)와 제12조(중재인 교체)는 중재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사무국이 중재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과 다른 중재인들의 의견을 받아 중재법원에 권고안과 함께 상정하며, 중재인 교체 또한 사무국이 중재인 직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법원에 중재인 기피와 마찬가지로 권고안과 함께 이 문제를 상정하게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재법원이 총회에서 - 위원회의가 아닌 -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을 만큼 중재인 기피와 교체에 대한 의사결정은 신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신규칙도 중재인 기피와 교체의 문제는 사무국이 그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되 최종 권한은 국제중재위원회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3) 중재판정문 검토

논자는 이미 앞에서 중재인 선정을 위한 후보자 추천권한을 과감하게 국제중재위원회에게 부여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중재인 후보자 추천 권한은 국제중재위원회에게는 분명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그런데 권한 뒤에는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다. 논자는 국제중재위원회 위원들에게 중재판정문의 검토를 맡겨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내려지는 중재판정의 수준과 나아가 강제집행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ICC 중재에서는 대부분의 중재판정 검토가 위원회의에서 다루어지고, 분쟁 금액이 매우 크고 복잡하거나, 정부 또는 정부산하기업이 관련된 경우, 소수의견이 달린 경우의 중재판정문은 총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원회나 총회와 같이 형식을 갖추어 판정문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이나 논자의 경험으로는 일정 부분 형식적이고 두 회의(위원회와 총회)에 사무국이 투입하는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중국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이하 CIETAC'이라 함)의 중재판정문 검토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일 것이다.<sup>110)</sup> 즉, 비교적 간단한 판정문에 대해서는 현행 대한상사중재원이 관행적으로 하고 있듯이 내부적인 검토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족해 보이며<sup>111)</sup>, ICC 중재에서 매달 1회 개최되는 총회에서 검토되는 복잡하고 분쟁규모가 큰 사건, 정부나 정부공기업이 참여하는 사건 그리고 소수의견이 포함된 중재판정문에 대해서는 사무국이 각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국제중재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여 그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하리라 본다.

---

110) Yu Jian-Long, “중국의 중재제도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CIETAC 중재판정의 중국에서의 집행”, 2008년 한 중 일 상사중재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한국중재학회 한중법학회, 2008. 5. 9., 66면; CIETAC의 사무총장인 Dr. Yu Jian-Long은 사무국이 중재판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판정문 초고 교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대하고 어려운 문제의 경우 전문가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111) 카이로 국제중재지역센터(Cairo Regional Center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이하 CRCICA)의 사무총장인 Dr. Abdel-Raouf에 따르면, CRCICA는 사무국이 심지어 중재판정의 오타를 위한 일독도 하지 않고 있으며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중재판정부의 책임이라고 한다. 나아가 UNCITRAL 중재규칙을 차용한 SCC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나 LCIA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에서도 사무국이 중재판정에 일체의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 V. 결 론

ICC 국제중재법원은 세계 어느 기관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바로 중재법원의 존재이다. 중재법원은 ICC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중재사건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외이사회와 같은 존재로 보인다. 중재법원은 임시에납금을 결정하고, 중재합의의 일응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며, 중재지를 결정하고, 중재인들을 확인하고 선정하며, 중재인기피와 교체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또한 중재판정문의 수준과 강제집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초안을 검토하며, 사무국과 중재판정부가 받아야 하는 중재비용을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기도 한다.

중재법원은 ICC의 사무국에 상근하며 중재사건의 의사결정에 매일매일 참여하는 존재가 아니며 추상적인 존재로 이해하여야 한다. 중재법원의 회장은 ICC 사무국에 상근하지만, 나머지 전세계 88개국 126명의 중재법원 위원들은 그러지 아니한다.

중재법원의 위원들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ICC 본관의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위원회의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총회에서 사무국이 의제로 올린 문제들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중재업무에 관여하는 존재이다.

일상의 중재업무는 ICC 사무국이 전담하고 있다. 사무총장의 지휘 아래 현재 6개 팀 - 프랑스팀, 독일팀, 이탈리아팀, 미국팀, 남미팀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팀 - 이 중재사건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중재법원의 위원들은 ICC에 의해 고용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재법원에 전폭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사무국은 중재법원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제공하고 위원회의나 총회에 의제를 상정하기 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staff meeting을 통해 사무국의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여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자세히 살펴 본 중재법원의 역할을 참고로 중재법원의 존재가 없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에서는 중재법원의 역할들이 사무국, 중재판정부 그리고 국제중재위원회 간에 어떻게 업무분장이 되어야 하는지 고찰해 보았다.

논자는 사무국이 임시에납금의 결정, 중재비용 확정, 중재인의 수 결정, 중

재합의의 일응의 존재 여부 결정, 중재인의 확인, 절차일정표와 중재판정의 제출에 대한 기한 등의 결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리라고 본다.

반면에 중재지와 중재언어의 결정, 중재합의 존부 및 유효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중재판정부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되며 국제중재 위원회에게는 ICC 중재에서 국내위원회가 맡고 있는 중재인 선정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한다. 나아가 중재인 기피와 교체의 최종 결정도 국제중재위원회가 하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중재판정문 검토와 관련하여서는 ICC 중재에서와 같이 위원회의나 총회와 같이 형식을 갖추어 판정문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으로 보이나 논자의 경험으로는 일정 부분 형식적인 면도 있고 사무국이 투입하는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져 보이는 점, 중재판정의 결과가 미리 외부에 누설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CIETAC의 중재판정문 검토 방식을 일부 차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비교적 간단한 판정문에 대해서는 사무국이 관행적으로 하고 있듯이 내부적인 검토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족해 보이며, 복잡하고 분쟁금액이 큰 사건, 정부나 정부산하 기업이 참여하는 사건 그리고 소수의견이 포함된 중재판정문에 대해서는 사무국이 각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다고 파악되는 국제중재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좀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지적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의 문제점들과 그 개선 방안은 추후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의 개정 시 적극 반영하여 이론과 현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중재의 잠재적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기대수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영학, “폭제상사분쟁해결을 위한 ICC 중재제도의 우월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2007.
- 석광현, “대한상사중재원의 2007년 국제중재규칙의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서울대학교 法學」, 제49권 제1호, 서울대학교, 2008
- 오원석, “ICC 중재에서 중재법원의 중재판정 검토(Scrutiny) 제도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7
- \_\_\_\_\_ 안건형, “ICC 중재에서 중재법원의 제3중재인 선정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3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8
- Briner R., “Implementation of the 1998 Rules,”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Bulletin, Vol. 2, ICC Publishing, 1997.
- Craig, W., Park, W., Paulsson, J.,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rbitration 3ed.*, Oceana Publications, Inc., 1998.
- Derains, Y., Schwartz, E., *A Guide to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2ed.*, Kluwer Law International, 2005.
-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Bulletin, Vol. 18, No. 1, ICC Publishing, August 2007.
- Kirby J., “The ICC Court: A Behind-the-Scenes Look” ,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Bulletin, Vol. 16, No. 2, ICC Publishing, Fall 2005.
- Redfern, A., Hunter, M., Blackbay, N., Partasides, C.,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4ed.*, Sweet & Maxwell, 2004.
- Schäfer, E., Verbist, H., Imhoos, C., *ICC Arbitration in Practic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5.
- Whitesell A. M., “Independence of Arbitrators,”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Bulletin, 2007 Special Supplement, ICC Publishing, 2008.
- <http://iccwbo.org/court/arbitration/id18648/index.html>, 6 May 2008.

## ABSTRACT

### **Implications of the Role of the Court Under ICC Arbitration for the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n Analysis focusing on the division of duties among the Secretariat,  
Arbitral Tribunal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ittee)

Ahn, Keon Hyung

The notion of the 'court' is most unique to ICC arbitration. This paper focuses on what the court is and how it works and what the role and the duties of the Court under the ICC arbitration imply for the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The Court is an administrative body that administers arbitrations taking place under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The Court consists of 126 members from 88 countries around the world. Court members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process by way of attending the committee sessions and plenary sessions.

At the Court's committee sessions, the Court fixes advance on costs; reviews the *prima facie* existence of arbitration agreements; fixes the place and language of arbitration, and the number of arbitrator(s); confirms and approves arbitrators; scrutinizes draft awards, determines the costs of arbitration; decides on extensions related to Terms of Reference, draft awards and correc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awards.

At the Court's plenary sessions, the Court performs only two responsibilities: the challenge or replacement of arbitrators or the scrutiny of draft awards. The Court is required to scrutinize draft awards involving states or state entities, drafts with huge amounts in dispute or complex technical or legal questions, and as well as draft awards to which a dissenting opinion has been attached.

Turning to the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rticle 1(3) provides that the KCAB shall establish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ittee. Further, it is provided that the KCAB shall consult with the said Committee with respect to challenge and replacement/removal of arbitrators pursuant to Article 1(3).

The notion and role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ittee was originally adapted from the Court to ICC arbitration, but its role was quite reduced in the process of enactment of its Rules.

Accordingly, I examined the detailed roles of the Court to ICC arbitration in this paper and hereby suggest that the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shall be amended in the following ways:

The Secretariat of the KCAB shall: fix advance on costs at the first stage and the costs of arbitration at the final stage of the proceedings; determine the number of arbitrators; review the *prima facie* of existence of arbitration agreement; confirm arbitrators; decide extensions related to time table, draft awards and correc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awards.

I, also, suggest that the arbitral tribunals shall fix the place of arbitration and the language of arbitration and make a final decision on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 With regard to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ittee, it is desirable for its Rules to empower the Committee to recommend any prospective arbitrator and to review and decide challenge and replacement/removal of arbitrators.

Key Words : The Role of the Court under the ICC Arbitration, Committee Session, Plenary Session,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ittee
--